



##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고 합니다)이 2024. 7. 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20개 가상자산거래소와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자율규제기구인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DAXA)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발표했고 2024. 7. 19.부터 시행 중입니다.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발행 재단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거래지원 심사요건

앞으로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자 할 경우, 거래소는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합니다. 형식적 심사요건은 부적격 요건으로 요건 하나라도 해당하면 거래지원이 불가합니다. 질적 심사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거래지원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유지심사는 분기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요건은 1) 발행주체의 신뢰성, 2) 이용자 보호 장치, 3) 기술·보안, 4) 법규 준수 항목으로 나뉘고, 항목별 형식적 심사요건(부적격 요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발행주체의 신뢰성

-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한 경우

-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가상자산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요 지갑 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2) 이용자 보호 장치

-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백서 등)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분산원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감시 수단(블록 익스플로러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 3) 기술·보안

-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관리하는 가상자산 지갑 또는 가상자산이 발행·전송·저장되는 분산원장 등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거나 치유되지 않은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분산원장에 내재된 토큰 스마트컨트랙트 소스코드가 확인되지 않거나 가상자산 발행·소각, 실행 권한자 변경, 계정 비활성화 등 중요 사건에 대해 이벤트 함수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4) 법규 준수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⑤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

- 다크 코인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상자산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 2. 발행하는 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은행”이라 한다)의 네트워크(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취급하는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증표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마.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한다.
- 5.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법규 우회 등 위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거나 실제 이러한 목

적으로 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이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위반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 대체심사 방안

비트코인과 같이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경우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발행주체가 불분명한 가상자산의 경우 대체심사방안을 통해 거래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에서 일정 기간(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요건 중 일부의 요건만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대체심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거래지원 심사요건 중 다음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발행주체, 운영주체가 작성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설명자료(백서 등) 미확인
-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미공시 등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 요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진입규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거래지원 심사 등이 존재하며 해당국의 법화로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적격 해외시장 리스트는 추가 조사 및 거래소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며, DAXA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만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발표는 되지 않았으니 앞으로 발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거래지원 심사절차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를 설치해야 하므로, 모든 가상자산 발행재단은 거래소 내의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를 통해 거래지원이 결정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최초 거래지원 개시뿐만 아니라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 거래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은 모두 위 심의·의결기구의 결정을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거래지원 업무 담당 임직원 및 위 심의·의결기구 위원은 가상자산 거래제한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지원 대가 수취, 이해관계자 사적 접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4. 거래소의 정보공개

가상자산 시장의 공시 표준 및 시스템 미비와 비협의 거래지원 관행으로 인해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충분한

공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필요한 가상자산에 관한 필수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거래소에서는 백서 원문, 백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한글자료, 가상자산 설명서(공통양식 사용),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주요 공시매체 링크 등을 거래지원 게시 전에 공개할 예정이며, 위 자료는 분기 1회 점검하여 가능한 한 최신 상태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발행재단에서도 이러한 정보가 잘 공개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거래지원 수수료

거래소는 거래지원의 대가로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래지원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연부과금(거래지원 기간에 한정)은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에 관한 규정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DAXA에서 2024. 7. 2.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했고 2024. 7. 19.부터 시행 중입니다.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발행 재단은 앞서 설명드린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구성원

**최영노** 변호사

T 02.3479.7876  
E genie7@barunlaw.com

**한서희** 변호사

T 02.3479.2351  
E suhhee.han@barunlaw.com

**마성한** 변호사

T 02.3479.7857  
E seonghan.ma@barunlaw.com

**김추** 변호사

T 02.6956.8327  
E chu.kim@barunlaw.com

**이규철** 변호사

T 02.3479.7858  
E gyuchul.lee@barunlaw.com

**민경현** 변호사

T 02.3479.5771  
E kyunghyun.min@barunlaw.com

**이철훈** 변호사

T 02.3479.2431  
E chulhoon.lee@barunlaw.com

**이용준** 고문

T 02.3479.7817  
E yongjun.lee@barunlaw.com

### Contact

**한서희** 변호사

T 02.3479.2351  
E suhhee.han@barunlaw.com